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제정 1996·3·1 조례 제134호

개정 1998·5·28 조례 제230호

개정 2009·12·10 조례 제8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8, 2009·12·10>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목별 성적이 “우” 평정 50퍼센트 이상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천시 통·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5·28 조례 제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